

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

▣ 특별공급 신청일정

구 분	일 자	시 간	장 소
신청일시	7월 4일(화)	10:00~15:00	당사 견본주택
당첨자 선정	7월 5일(수)	14:00	당사 견본주택 계재
동·호수 발표	7월 13일(목)	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	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ap2you.com)

- ※ 기관 추천을 받은자는 신청일시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신청을 하여야 함
- ※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 될 수 있음

▣ 대상자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여부
국가유공자, 장애인, 철거주택 소유자	청약통장 필요없음
장기복무 군인, 중소기업 근로자 등	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

▣ 특별공급 자격요건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6.29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자만 신청가능.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 [미신청시 당첨자 선정(동·호수 배정) 및 계약 불가]
- 해당기관 : 장애인-인천시청, 경기도청, 장애인복지과(장애인 확인서(추천서) 발급가능, 서울시청 장애인지립정책과 / 군인 - 국방부
-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(국가유공자 등 제외)
 - 주택청약종합저축 : 지역별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예금 :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
 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㎡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

▣ 특별공급 구비서류(기관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)

구 분	구비서류
공통서류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서약서(견본주택 비치)
	인감증명서(주택공급 신청용)
	인감도장
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	주민등록표등본 [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	주민등록표초본 [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]
해당자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(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) [일반(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(국가유공자 등 제외)]
	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)
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[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]
대리인 신청시	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단체인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(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)
	위임장(견본주택 비치)
	신청인 인감증명서(주택공급신청 위임용)
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

- ※ 위 필요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해당됨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- ※ 상기 내용은 참고용이며, 더 정확한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람.